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발견 신고,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명령으로 손실이 생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야생생물 수입·반입을 제한(안 제14조의2 단서 신설)
- 나.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안 제23조의4, 안 제39조제3항)
- 다. 보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의4제1항”을 “법 제34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4 중 “법 제34조의7제2항”을 “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한다.

제23조의5 중 “법 제34조의7제4항제3호”를 “법 제34조의7제5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보상금 등) ① 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의한 야생동물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야생동물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목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나목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머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저목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표 커목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표 퍼목 중 “법 제34조의10제3항”을 “법 제34조의10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허목 중 “매몰한ㄴ”를 “매몰한”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야생동물과 사산 또는 유산된 야생동물의 태아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당시의 해당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경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과 정상적인 야생동물의 차액

나. 법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경우: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유료 관람객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 유료 관람객수) × 해당 사육시설의 최근 1년 평균 1인당 유료 관람료 × 70퍼센트(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다. 법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야생동물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이하 “야생동물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야생동물이 발견된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시·군·구 단위로 판단한다): 야생동물 평가액 전액
-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90
- 3) 그 밖의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80

2.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호다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가. 법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기준일) 다음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1)에 따른 기준일부터 2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3)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1)에 따른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4)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1)에 따른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5)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다.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살처분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야생동물 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3) 야생동물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 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 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 ----- ----- ----- -----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 제2항----- ----- -----.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3조의5(야생동물 질병의 통보 기관) 법 제34조의7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질병관리본부장을 말한다.

<신 설>

제39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의6제1항-----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제23조의5(야생동물 질병의 통보 기관) 법 제34조의7제5항제3호-----
-----.

제38조의2(보상금 등) ① 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의한 야생동물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야생동물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연 락 처	(044) 201 - 7494